

# 검 토 보 고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<부칙지정>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2년 3월 6일
- 회부일자 : 2002년 3월 7일

3. 제안이유
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시행에 따른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계획에 의거
- 저소득층 및 모자보육가정,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13명 ⇒ 2,416명(3명 증원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3명 ⇒ 1,406명(3명 증원)
 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14명(변동없음)
 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(변동없음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(변동없음)
- ※ 도 본청 : 2명(6급 1명, 7급 1명), 증평출장소 : 1명(8급1명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거 「찾아가는 복지」 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명(도본청 2명, 증평출장소 1명)을 확충하려는 것으로,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